

## 학교급식실의 그림자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산재 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학교 혹은 위탁업체 측의 권유로  
산재를 포기하기도 하고, 산재를 신청할 경우  
재계약이 안 될 것을 두려워한다.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 근골격계 부담 높은 업종, 손가락은 굵고 팔은 비틀어지고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과 함께 부활했다. 1992년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사업, 2003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 2006년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그동안 꾸준히 학교급식에 대한 발전이 이뤄져 왔지만, 정작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으로 100%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11,818개 학교에서 1일 평균 561만 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인력은 70,873명으로 영양(교)사 10,304명, 조리사 10,676명, 조리원 49,893명으로 평균 조리원 1명이 112명 학생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조리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밀도의 노동 중 하나이다. 골절기, 야채절단기,

## 제언

실제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사이에서는 손가락이 굽고 팔이 비틀어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대량의 조리작업 과정에서 상지에 작용하는 힘과 반복성 때문이다.

양념다지기 등의 기계와 칼이나 주방기구의 사용은 자상이나 절단 등의 위험성을 높이고,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로 인한 미끄러짐, 고온의 조리 과정에 의한 화상, 좁은 공간에서의 끼임 등은 급식실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이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작업은 식판이나 기계의 작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고, 밥, 국, 튀김, 전, 볶음 등의 고열,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PAH와 같은 화학물질, 밀가루 등 곡물 분진과 후추 등 향신료·조미료에 노출, 세제와 소독제 취급 및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부담은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 자가 증상 호소율이 52.0%였다고 보고하였고, 2017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증상자는 79.5%로 보고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해당 조리원의 95.2%가 NIOSH 증상호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질환의심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업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조선 업종에 비해 20% 이상을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의 증상호소율을 보였다. 실제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사이에서는 손가락이 굽고 팔이 비틀어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대량의 조리작업 과정에서 상지에 작용하는 힘과 반복성 때문이다.

## 드러난 급식실 조리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빙산의 일각

김종훈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6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7만여 명(영양(교)사 포함)으로 2017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 재해율은 0.81%이다. 2017년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 0.48%에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2012년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 발생 시 병원에서 치료한 경험은 32.4%였으며 본인 비용으로



치료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처리한 경우는 1.7%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급식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0.81%라는 높은 산재율은 실제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산재 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학교 혹은 위탁업체 측의 권유로 산재를 포기하기도 하고, 산재를 신청할 경우 재계약이 안 될 것을 두려워한다. 또한 산재 처리를 하면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가, 학교가 징계를 당한다거나 재해 인정이 잘 안되고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상식으로 이를 주저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를 요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게 되어서야 산재 신청을 고려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이다. 학기 중에는 몸이 아픈 것을 참고 일하고, 방학에야 비로소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현실이다.

그동안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2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인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지정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또한, 3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지켜야 하는 의

## 제언



무에서도 제외되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준수 의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등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대부분(88.6%)이 오랜 기간동안 비정규직인 상태로 일을 하였고 40~50대의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고밀도의 노동 중 하나가 방치되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법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저선의 규정인 만큼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형식에 그쳐서는 제대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